##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경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621 발의연월일: 2024. 3. 27.

발 의 자:양경규·윤미향·강성희

장혜영 · 강은미 · 배진교

박용진 • 이자스민 • 심상정

김주영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하여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이라 함)으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지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대규모유통업자가 파견된 종업원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등 일정한 경우 파견조건을 서면으로약정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유통업에서 주력 업무는 상품의 '판매업무'에 해당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종업원을 직접 고용하여 '판매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현행법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우월적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자등에게 종업원 고용을 전가하고 있으며, 위규정 중 '파견'이라는 용어가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므로 적절한용어로 대체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파견'을

'전출'로 개정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전출받을 수 없도록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매장임차인에 한하여 대규모유통업자의 사업지에 종업원을 전출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2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경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266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 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 되어야 할 것임.

#### 법률 제 호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인력(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을 파견"을 "인력을 전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납품업자등"을 각각 "매장임차인"으로, "파견조건"을 "전출조건"으로, "파견된 종업원등을 해당 종업원등"을 "전출된 종업원을 해당 종업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파견된 종업원등"을 "전출된 종업원들"을 "전출된 종업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납품업자등이 종업원등"을 "전출된 종업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납품업자등이 종업원등의 파견"을 "종업원의 전출"로, "종업원등의 파견"을 "종업원의 전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종업원등을 파견"을 "종업원을 전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납품업자등"을 "매장임차인"으로, "종업원등을 파견"을 "종업원등을 파견"을 "종업원등을 파견"을 "종업원등을 파견"으로, "종업원등을 파견"을 "종업원을 전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납품업자등"을 각각 "매장임차인"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간의 계약 이 체결 또는 갱신되거나 연장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
용 금지 등) ① 대규모유통업	용 금지 등) ①
자는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종업	
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등에	
고용된 <u>인력(이하 이 조에서</u>	<u>인력을 전출</u>
"종업원등"이라 한다)을 파견받	
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	,
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u>매장임차인</u>
당하는 경우로서 <u>납품업자등</u> 과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출조건
바에 따라 <u>파견조건</u> 을 서면으	<u>전출된 종업원을 해당 종업</u>
로 약정하고 <u>파견된 종업원등</u>	<u> 원</u>
<u>을 해당 종업원등</u> 을 고용한 <u>납</u>	
<u>품업자등</u> 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 대규모유통업자가 대통령령	1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파견</u>	<u>전출된</u>
된 종업원등의 인건비를 비롯	<u> 종업원</u>
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경	
<del>^</del>	

- 2. <u>납품업자등이 종업원등의 파</u>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명시한 서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u>종업원등의 파견</u>을 요청하는 경우
- 3.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u>종업원등을</u><u>파견</u>받는 경우
- 4. 특약매입거래를 하는 <u>납품업</u> 자등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상품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를 판매·관리하기 위하여 <u>종업원등을 파견</u>받는 경우② 제1항 단서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u>납품업자등</u>이,제1항제2호의 서면에는 <u>납품업자등</u>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생략)

2.	매장임차인	0]	종업	원의	<u>전출</u>
		_			
	종업원의 전	<u>줄</u> -			
3.					
•			조어	ol O	コネ
			<u> 중 월</u>	전글	<u> 신</u> 돌
4.				<u>п</u> }	장임
	<u> 차인</u>				
	<u> </u>				
		_			
	종업원을 전	줄-			
2	)				
		T	매장우	l 차인	
				_	
					[성 ]
<u>え</u>	<u>-인</u>				
<u>(3</u>	) (현행과 <b>깉</b>	나음`	)		
U	/ ( L	. ப	•		